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1	[긴급]회계처리 문의	2021-02-10	210
2	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2021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예산 제출 …	2021-02-14	114
3	산학단회계규칙 2021 일부 개정 문제점	2021-02-17	111
4	[산단]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재원 '연구원' 인건비(급여) 처리 계정과…	2021-02-25	102
5	회계처리 질문	2021-02-21	84

교비회계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분개문의

작성일 2019.12.19 **조회수** 2058

1.사실관계

- 전기차 구입(기계기구) : 공급가액+부가세액 4,800만원

- 실제 구입금액 : 전기차 금액 4,800만원 - 전기차 구입 보조금 1,200만원 = 3,600만원

(전기차 구입 국가보조금의 경우 차량 판매회사로 지급되어 실제 구입시 차감받아 구입하는 형태)

- 세금계산서 발행 : 4,800만원

- 용도 : 학과 실험실습용

- 자산등록 : 기계기구

2.질의사항

- 전기차 구입시 분개 시 1안처럼 순수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인식할지, 2안처럼 전기차 판매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을 우리학교의 국고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수입처리할지 문의드립니다

1안 (차) 기계기구:전기차 3,600 / (대) 예금 3,600

2안 (차) 기계기구:전기차 4,800 / (대) 예금 3,600

(대) 국고보조금수입 1,200

- 또한 행정용 차량이 아닌 학과의 실험실습용으로 구입하여 기계기구로 등록하였는데, 이 경우 감가상각비는 일반 차량에 준하는 10년으로 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계기구 감가상각비 연한인 5년으로 할지 문의드립니다.

-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 경우 충전설비 및 공사비로 200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이 설치공사를 실험실습비로 처리해도 될지, 혹은 기계기구로 자산등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분개문의

답변일 2019.12.20

전기차량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대학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차량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실제 소요된 비용 (3,600만원)을 취득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실험실습용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기계구입으로 계정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차량운반구로 계상하고 5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인쇄 스크랩

답변등록 목록

윗글 연구/교육용 전기차의 자산등록시 구분 문의

아랫글 이전글이 없습니다.